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80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이철규 · 안철수 · 서명옥
정희용 · 박상용 · 강대식
구자근 · 강승규 · 박준태
이양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관련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 · 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 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 ·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 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 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 · 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 ·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u></p>

<p>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생략)</p>	<p>다.</p> <p>④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⑤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10조의3(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p>
---	---